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0호, 2020. 6. 9. 공포, 2022. 6. 10.)됨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절차나 연구실안전관리 자격을 인정하는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등(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신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2)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서술형을 원칙으로 실시하도록 함.
- 3)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로 추가함.

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 추가 등(안

별표 2,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추가하고,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점검 실시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2. ~ 10.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사

제6장 및 제7장을 각각 제7장 및 제8장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6장(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사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운영,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③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환급, 자격증 발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응시자격)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26조(시험 방법 및 과목) ① 안전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서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시험 과목 및 범위는 별표 9의3과 같다.

제27조(평가위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 시험의 실시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과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위촉·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

· 훈련은 24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구실안전관리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법 제3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도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지도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31조(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9의4와 같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별표 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별표 4 제2호 표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같은 표의 소방 및 가스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및 같은 표의 산업위생 및 생물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에 제
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별표 4에 제2호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
업무(과학기술분야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한 모든 업무 활동을 말한다) 경력이 1년 이상
인 사람

별표 5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란, 같은 표의 소방 및 가스의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및 같은
표의 산업위생 및 생물의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에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별표 6 제1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안전 업무 경력
이 3년 이상인 사람

별표 6 제1호나목 표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자격 요건란, 같

은 표의 소방의 자격 요건란 및 같은 표의 가스의 자격 요건란에 1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별표 6 제1호나목 표의 산업위생 및 생물의 자격 요건란에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별표 7 제1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별표 7 제1호나목 표의 일반안전의 자격 요건란의 1) 및 2)를 각각 2) 및 3)으로 하고, 같은 란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별표 7 제1호나목 표의 기계의 자격 요건란, 같은 표의 전기의 자격 요건란 및 같은 표의 화공 및 위험물 관리의 자격 요건란에 2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별표 7 제1호나목 표의 소방의 자격 요건란 및 같은 표의 가스의 자격 요건란에 1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별표 7 제1호나목 표의 산업위생 및 생물의 자격 요건란에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별표 9의2부터 별표 9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의2]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이하 “안전관리분야”라 한다)나 안전관리 유사분야(직무분야가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안전관리유사분야”라 한다)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안전 관련 학과의 4년제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5. 안전 관련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안전 관련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이공계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이공계 학과의 4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9. 이공계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 이공계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1.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별표 9의3]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 과목 및 범위(제26조제4항 관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제1차 시험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 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
	연구실 안전관리 이론 및 체계	- 연구활동 및 연구실 안전의 특성 이해 -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행 역량 - 연구실 유해·위험 요인 파악과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방법 - 연구실 안전교육 - 연구실사고 대응 및 관리
	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 화학·가스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화학물질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 연구실 내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 방지 대책 - 화학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	- 기계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위험기계·기구 및 연구장비 안전관 리 - 연구실 내 레이저, 방사선 등 물리적 위험요인 에 대한 안전관리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 생물(유전자변형생물체 포함)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생물체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 연구실 내 생물체 누출 및 감염 방지 대책 - 생물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	-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화재, 감전, 정전기 예방 및 방폭· 소화 대책 - 전기·소방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연구활동종사자 보건·위생 관리 및 인간공학적 안전관리	- 보건·위생 관리와 인간공학적 안전관리 일반 - 연구활동종사자 질환 및 인적 과실(Human error) 예방·관리 - 안전 보호구 및 연구환경 관리 - 환기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제2차 시험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 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 연구활동종사자 보건·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9의4]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법 제38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연구실

안전관리사 직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자격취소		
마.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5호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바.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구실안전관리사 업무	법 제38조 제1항제6호	자격취소		

를 수행한 경우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 ----- ----- ----- ----- -----. 1. ~ 5. (현행과 같음) <u>6. 연구실안전관리사</u>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u> <u>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사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u>

<신 설>

<신 설>

않을 수 있다.

②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운영,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③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환급, 자격증 발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응시자격)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26조(시험 방법 및 과목) ① 안전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서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시험 과목 및 범위는 별표 9의3과 같다.

제27조(평가위원 등)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 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 시험의 실시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과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위촉·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

<신 설>

<신 설>

른 교육·훈련은 24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구실안전관리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법 제3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전 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도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구 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지도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31조(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에

<u>제6장</u> 보칙 <u>제24조</u> (생략) <u><신설></u> <u>제25조</u> (생략) <u>제7장</u> 벌칙 <u>제26조</u> (생략)	<u>대한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9의4와 같다.</u> <u>제7장</u> 보칙 <u>제32조</u> (현행 제24조와 같음) <u>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u> 과 <u>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u>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u> <u>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u> <u>제34조</u> (현행 제25조와 같음) <u>제8장</u> 벌칙 <u>제35조</u> (현행 제26조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연 락 처	(044) 202 - 4852